



제438회국회(임시회)
제1차 정무위원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규제대상의 지분을 산정방식 변경〉
■ 이인영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7963호)

2026. 8.

정 무 위 원 회

전문위원 구 현 우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이인영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6. 3. 31.
3. 회 부 일 : 2026. 4.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익편취행위에 대한 규제 조항을 두어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 회사로 하여금 동일인 및 그 친족인 특수관계인, 해당 동일인 등이 발행주식총수의 20% 이상을 소유한 국내 계열회사, 또는 해당 계열회사가 단독으로 발행주식총수의 50%를 초과하여 소유하는 자회사를 대상으로 정상적인 조건보다 유리한 거래를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키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발행주식총수 대비 동일인 등의 소유 비율은 규제 기준 이하로 유지하면서 자사주 매입 등을 통하여 실제 유통되는 주식총수를 줄이고 유통주식총수 대비 동일인 등의 소유 비율을 높이는 방법으로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키는 사례가 지적되면서 그 적용 기준을 개선할 필요성이 제기됨. 특정 기업이 자기가 발행한 주식을 매입하여 보유하는 자사주 매입은 유통되는 주식수를 감소시켜 주가를 부양하는 주주환원 정책으로 여겨지지만, 의결권과 배당권이 없는 자사주 수까지 발행주식총수에 포함되다 보니 위와 같은 자사주 매입을 통하여 동일인

등이 사익편취행위 규제를 빠져나가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비판임.

이에 사익편취행위 규제의 대상 기준을 현행 발행주식총수에서 자
사주를 뺀 실제 유통주식수의 소유 비율로 변경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규제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7조제1항).

Ⅲ. 검토의견

- 개정안은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의 규제 대상인 계열회사의 지분을 산정방식을 변경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47조(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 ① 공시대상기업집단(동일인이 자연인인 기업집단으로 한정한다)에 속하는 국내 회사는 특수관계인(동일인 및 그 친족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동일인이 단독으로 또는 다른 특수관계인과 합하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의 주식을 소유한 국내 계열회사 또는 그 계열회사가 단독으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을 소유한 국내 계열회사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통하여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7조(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 ① --- ----- ----- ----- ----- ----- ----- 유통주식수(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정기준 및 산정절차에 따라 발행주식총수에서 자기주식의 수를 제외한 주식총수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100분의 20 이상의---- ----- ----- 유통주식수의 100분의 50을-- -----

현행	개정안
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의 유형 및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 ----- ----- ----- -----.
1. ~ 4. (생략) ② ~ ④ (생략)	1. ~ 4.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 현행법 제47조제1항은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사익 편취)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 즉, 제47조제1항 각호 외의 부분에서는 동일인이 자연인인 공시대상 기업집단에 속한 국내회사가 특수관계인(동일인과 그 친족에 한정함) 또는 동일인과 특수관계인이 합하여 일정한 비율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계열회사 또는 그 계열회사의 자회사에 부당하게 이익을 귀속시키는 행위를 금지함.

- 같은 항 각호에서는 금지하는 행위의 유형을 4가지로 열거하고 있는데, ①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조건보다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② 회사가

직접 또는 자신이 지배하고 있는 회사를 통하여 수행할 경우 회사에 상당한 이익이 될 사업기회를 제공하는 행위, ③ 특수관계인과 현금이나 그 밖의 금융상품을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④ 사업능력, 재무상태, 신용도, 기술력, 품질, 가격 또는 거래조건 등에 대한 합리적인 고려나 다른 사업자와의 비교 없이 상당한 규모로 거래하는 행위가 이에 해당함.

□ 한편, 시행령(별표3)에서는 법 제47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의 구체적인 유형을 규정하고 있고, 공정거래위원회 예규인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심사지침’에서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에 관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심사기준을 제시하고 있음.

□ 2013년 도입한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규제는 주로 기업이 내부거래를 통해 대기업 총수 일가가 지분을 적게 가진 계열회사로부터 지분을 많이 보유한 계열회사로 그 이익을 귀속시키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취지임.¹⁾

□ 2020년 이전까지는 「구(舊)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2항에 따라 특수관계인에

1) 예를 들어, 대기업 총수일가가 지분을 20% 소유한 A 기업과 대기업 총수일가가 지분을 100% 소유한 B 기업 간 내부거래를 통해 A기업은 10억원의 손실을, B 기업은 10억원의 이익을 거두었다면, 해당 총수일가는 2억원의 손실(10억원의 20% 손실), 10억원의 이익(10억원 100% 이익)을 발생시킬 수 있으므로 총수일가의 지분이 높은 기업으로 이익을 귀속시키는 거래를 할 유인이 커질 수 있음.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규제의 적용 대상은 비교적 한정적이었음.²⁾

- 즉, 시행령 규정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가 총수 일가의 지분율이 100분의 30 이상인 주권상장법인 계열회사(비상장법인의 경우 100분의 20 이상)에 대해서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였었음.

□ 그러나 총수 일가가 주권상장법인의 계열회사에 대한 지분율을 100분의 30 미만으로 낮추는 방식으로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규제를 회피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국회는 2020년 전부개정을 통해 현행처럼 법률에 지분율을 명시하였음.

- 법 제47조제1항에 주권상장법인 여부와 관련 없이 총수 일가, 총수 일가가 100분의 20 이상 지분을 소유한 계열회사, 이들 회사가 100

2) 「**구(舊)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 ① 공시대상기업집단(동일인이 자연인인 기업집단으로 한정한다)에 속하는 회사는 특수관계인(동일인 및 그 친족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나 특수관계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계열회사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통하여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조건보다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2. 회사가 직접 또는 자신이 지배하고 있는 회사를 통하여 수행할 경우 회사에 상당한 이익이 될 사업 기회를 제공하는 행위
3. 특수관계인과 현금, 그 밖의 금융상품을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4. 사업능력, 재무상태, 신용도, 기술력, 품질, 가격 또는 거래조건 등에 대한 합리적인 고려나 다른 사업자와의 비교 없이 상당한 규모로 거래하는 행위

「**구(舊)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

② 법 제23조의2(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특수관계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계열회사"란 동일인이 단독으로 또는 동일인의 친족[제3조의2(기업집단으로부터의 제외)제1항에 따라 동일인관련자로부터 분리된 자는 제외한다]과 합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주권상장법인이 아닌 회사의 경우에는 100분의 2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를 말한다.

분의 50을 초과하여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에 대해서는 모두
규제를 적용하도록 하였음.

- 개정안은 동일인이 자연인인 공시대상 기업집단에 속한 국내회사가
특수관계인(동일인과 그 친족에 한정함) 또는 동일인과 특수관계인이
합하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 및 이들 회사가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에 부당하게 이익을 귀속시키는 행위를
금지하던 것을,

‘유통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계열
회사 및 이들 회사가 유통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에 부당하게 이익을 귀속시키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으로 규제대상의 지분을 산정방식을 변경하려는 것임.

- 유통주식총수(shares outstanding)는 발행주식총수(issued shares)
에서 매입 자사주를 제외하여 산출³⁾되고, 자사주(treasury
shares)는 「상법」 제341조의⁴⁾에 따라 의결권이나 배당권, 신

3) 김우진 외 2인, ‘자사주 포함 관행이 시가총액 및 주당지표에 미치는 영향’, 「한국증권학회지」 49(2), 2020, 2., pp. 249~251

4) 제341조의3(자기주식의 권리제한 등) ① 회사는 자기주식에 관하여 제369조의 의결권, 제418조의 신주
인수권, 제461조제2항에 따른 주식을 발행받을 권리, 제462조 및 제462조의2부터 제462조의4까지에 따
른 배당을 받을 권리 등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다.

② 회사는 제469조에도 불구하고 자기주식으로 교환 또는 상환할 수 있는 사채를 발행할 수 없다.

③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은 질권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④ 회사는 발행주식총수의 20분의 1을 초과하여 자기의 주식을 질권의 목적으로 받지 못한다. 다만, 제341
조의2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그 한도를 초과하여 질권의 목적으로 받을 수 있다.

주인수권 등 권리가 제한됨.

□ 개정안은 자사주를 부당한 이익제공의 규제대상과 관련한 지분을 산정에 포함하여 규제의 사각지대 및 왜곡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불식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임.

- 즉, 현행 규정의 규제대상은 $\frac{\text{총수일가가소유한주식}}{\text{발행주식총수} = (\text{유통주식총수} + \text{자사주})} > \frac{20}{100}$

인 공시대상기업집단인데, 기업집단이 자사주 매입을 통해 지분을 의도적으로 낮출 유인이 있다는 문제의식임.

□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개정안을 입법화할 경우 동일인이 자연인인 공시대상기업집단 중 7개 기업집단(2025년 기준)이 새롭게 규제대상에 편입됨.

- 이에 따라 부당한 이익제공의 규제대상은 ① 7개 기업집단 계열회사, ② 7개 기업집단의 계열회사가 50%를 초과하여 지분을 가져 새롭게 규제대상에 포섭되는 33개의 자회사, ③ 기존 규제대상이었던 계열회사가 50%의 초과지분을 보유하게 되는 3개의 자회사까지 총 43개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총 958개→1,001개).

<개정안에 따라 새롭게 규제대상이 되는 기업집단>

(단위: %)

기업집단	계열회사	총수일가 지분율	자사주 제외 지분율	계열회사가 50%를 초과하여 지분을 가진 자회사 수
롯데	롯데지주(주)	15.21	22.47	12
LS	(주)엘에스	19.56	23.03	6
HDC	에이치디씨랩스(주)	18.82	21.26	0
효성	마이스터모터스(주)	19.99	28.98	0
DB	디비손해보험(주)	18.10	21.35	7
OCI	(주)유니드비티플러스	19.99	21.02	0
삼천리	(주)삼천리	18.19	21.54	8
				7개 기업집단 및 33개 자회사

주: 계열회사는 총수일가가 20% 이상 지분을 소유한 경우를 말함

주: 새롭게 규제 대상이 되는 43개사 중 ③ 기존 규제대상이었던 계열회사가 50%의 초과지분을 보유하게 되는 3개의 자회사는 제외한 표임.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 특히 일부 기업집단은 계열회사에 대한 총수일가의 지분율을 19.99%로 유지하는 등 현행법의 규제를 회피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으므로 개정안을 통해 규제의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것은 타당한 측면이 있음.⁵⁾

☐ 아울러, 개정안은 기업집단의 자사주 보유 유인을 줄임으로써 정부의 증시 부양 정책과 그 기조를 함께 할 수 있다는 긍정적 효과도

5) 공정거래위원회도 개정안에 찬성하는 입장임.

기대됨.

- 현행법에서는 기업집단이 자사주를 보유함으로써 부당한 이익제공의 규제를 회피할 유인이 있으나, 개정안대로 입법화하면 기업집단이 부당한 이익제공과 관련한 규제의 회피목적으로 자사주를 보유할 유인이 없어지기 때문임.

□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개정안의 내용에 전반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이나, 개정안 중 유통주식수 산정기준 및 산정절차를 시행령으로 위임하는 부분은 시행령으로 구체화할 내용이 없는 점⁶⁾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109

6) 유통주식수의 산정은 발행주식총수에서 자사주의 수만 제외하는 것이기 때문임.